

# 시스템경비 신청서

[회사용]

(계약번호: N )

<b>고객 사항</b>  본 항목은 고객께서 직접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객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고객주소	□ (전화: )		
	경비대상처명칭	업종		
		경비구역	도면참조	
	경비대상처주소	□ (전화: )		
	청구서종류	□ E-mail( @ ) □ 우편		
전자세금계산서 SITE	세금계산서 E-mail 주소	1.		
		2.		
<input type="checkbox"/> 자동이체 <input type="checkbox"/> 카드결제	자동이체일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15일 <input type="checkbox"/> 18일 <input type="checkbox"/> 21일		
	은행명(카드사)	카드유효기간	20    년    월	
	계좌번호(카드번호)	예금주(카드주)	(인)	
	생년월일	카드이체일	매월    일	
<b>계약조건 및 시스템 내용</b>	신청금	₩	* 종합안심플랜 비용 포함	
	월서비스료	₩	* 회사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만    * 1개월 선납, 자동이체, 부가세 별도	
	견적설치비	₩	유효하오니 입금시 수취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치비(부가세 별도)    * 회사는 계약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설치비를 할인하며, 중도해지 시 할인금액(견적설치비 - 계약설치비)이 청구됩니다. (설치는 에스원 협력회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계약설치비	₩		
	설치착수예정일	20    년    월    일	경비개시예정일	20    년    월    일
	카드매수	총    매 (기본    매, 추가할 경우 고객부담)		
	제공서비스	<input type="checkbox"/> 방법 <input type="checkbox"/> 영상 <input type="checkbox"/> 출입 <input type="checkbox"/> 근태/식수 <input type="checkbox"/> 비상 <input type="checkbox"/> 기타 부가서비스( )		
	계약구분	<input type="checkbox"/> 신규 <input type="checkbox"/> 재계약	* 신규계약은 경비개시일로부터/ 재계약시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기간이 기산됩니다.    * 서비스 중지기간은 계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계약기간	<input type="checkbox"/> 3년 <input type="checkbox"/> 5년		
	설치기기			
	통신회선	<input type="checkbox"/> 공중회선 <input type="checkbox"/> S1NET(무선망) <input type="checkbox"/> 인터넷 <input type="checkbox"/> 기타( ) * 'S1NET(무선망)'신청시 S1NET 이용특약이 적용됩니다.		
	출동료	₩	* 고객의 사유나 약정된 서비스이외로 출동한 경우 청구	
	철거비	* 약관에 따름, 부가세 별도		
	손해배상한도액	방법 서비스	대인(2천만원/1인) : <input type="checkbox"/> 2억원    대물 : <input type="checkbox"/> 1억원 <input type="checkbox"/> 3억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	
비상통보, 화재이상통보, 설비이상통보, 설비연동, 방법이상통보, 생활감지통보 서비스		대인, 대물 각 2천만원		
	출입통제 및 출입관리, 근태관리/식당관리, 영상기기 렌탈, 영상확인, 가스차단, 대기전력차단, 전등제어 서비스	대인, 대물 합하여 총 5백만원		
<b>특약 사항</b>	면책구역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		
	기타 특약			
20    년    월    일				
고객(신청인) :		(인)		
주식회사 에스원 귀중				

# 시스템경비 신청서

[고객용]

(계약번호: N )

고객 사항	고객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고객주소	□ (전화: )		
	경비대상처명칭	업종		
		경비구역	도면참조	
	경비대상처주소	□ (전화: )		
	청구서종류	□ E-mail( @ ) □ 우편		
□ 자동이체 □ 카드결제	전자세금계산서 SITE	세금계산서 E-mail 주소	1. 2.	
	자동이체일	□ 5일 □ 10일 □ 15일 □ 18일 □ 21일		
	은행명(카드사)	카드유효기간	20 년 월	
	계좌번호(카드번호)	예금주(카드주)	(인)	
생년월일	카드이체일	매월 일		
계약조건 및 시스템 내용	신청금	₩	* 종합안심플랜 비용 포함	
	월서비스료	₩	* 회사명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만 * 1개월 선납, 자동이체, 부가세 별도	
	견적설치비	₩	유효하오니 입금시 수취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설치비(부가세 별도) * 회사는 계약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설치비를 할인하며, 중도해지 시 할인금액(견적설치비 - 계약설치비)이 청구됩니다. (설치는 에스원 협력회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계약설치비	₩		
	설치착수예정일	20 년 월 일	경비개시예정일 20 년 월 일	
	카드매수	총 매 (기본 매, 추가할 경우 고객부담)		
	제공서비스	□ 방법 □ 영상 □ 출입 □ 근태/식수 □ 비상 □ 기타 부가서비스( )		
	계약구분	□ 신규 □ 재계약	* 신규계약은 경비개시일로부터/ 재계약시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계약기간이 기산됩니다. * 서비스 중지기간은 계약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계약기간	□ 3년 □ 5년		
	설치기기			
	통신회선	□ 공중회선 □ S1NET(무선망) □ 인터넷 □ 기타( ) * 'S1NET(무선망)'신청시 S1NET 이용특약이 적용됩니다.		
	출동료	₩	* 고객의 사유나 약정된 서비스이외로 출동한 경우 청구	
	철거비	* 약관에 따름, 부가세 별도		
손해배상액	방법 서비스	대인(2천만원/1인) : □ 2억원 대물 : □ 1억원 □ 3억원 □ 기타( )		
	비상통보, 화재이상통보, 설비이상통보, 설비연동, 방법이상통보, 생활감지통보 서비스	대인, 대물 각 2천만원		
	출입통제 및 출입관리, 근태관리/식당관리, 영상기기 렌탈, 영상확인, 가스차단, 대기전력차단, 전등제어 서비스	대인, 대물 합하여 총 5백만원		
특약 사항	면책구역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		
	기타 특약			
20 년 월 일				
고객(신청인) :		(인)		
주식회사 에스원 귀중				

# 종합안심플랜 신청서

[회사용]

※ 종합안심플랜 서비스는 회사가 회사의 시스템경비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제공되는 부가안심서비스입니다.

## 1. 스페셜보상 플랜

- 불법침입, 절도 등 도난 손해에 대해 보상

일 반 :  5백만원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주 택 :  5백만원  1.5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화재복구지원금 :  실손해를 근거로 최대 1천만원 지급

## 2. 화재안심보험 플랜

화재안심 :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 3천만원 이상 플랜은 유리/전기/급배수누출 추가(각 한도 5백만원)

- 화재안심 : 우연한 화재(낙뢰포함)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유리손해 : 돌발적인 사고로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에 생긴 파손 손해

- 전기적손해 : 전기 기기 또는 장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의 목적으로 한 경우, 그 전기 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발생한 손해(화재손해 제외)

- 급배수누출손해 : 수조, 급배수 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되어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

이웃배상 :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 가입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생긴 화재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담보

매출안심 :  6만원/1일당(최대 2개월까지 지급)

- 화재, 풍수재 사고로 인해 휴업을 하게 된 경우 명시한 보상금액을 일당으로 지급

풍 수 재 :  5백만원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

## 3. 재난보상 플랜

- 재난 취약시설 內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제3자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2 해당 시설

면적 : \_\_\_\_\_ m<sup>2</sup> ※ 건축물대장 기준

20      년      월      일

고객(신청인) :

(인)

주식회사 에스원 귀중

# 종합안심플랜 신청서

[고객용]

※ 종합안심플랜 서비스는 회사가 회사의 시스템경비서비스를 제공받는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제공되는 부가안심서비스입니다.

## 1. 스페셜보상 플랜

- 불법침입, 절도 등 도난 손해에 대해 보상

일 반 :  5백만원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주 택 :  5백만원  1.5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화재복구지원금 :  실손해를 근거로 최대 1천만원 지급

## 2. 화재안심보험 플랜

화재안심 :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 3천만원 이상 플랜은 유리/전기/급배수누출 추가(각 한도 5백만원)

- 화재안심 : 우연한 화재(낙뢰포함)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유리손해 : 돌발적인 사고로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에 생긴 파손 손해

- 전기적손해 : 전기 기기 또는 장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의 목적으로 한 경우, 그 전기 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발생한 손해(화재손해 제외)

- 급배수누출손해 : 수조, 급배수 설비 또는 수관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되어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

이웃배상 :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 가입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생긴 화재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담보

매출안심 :  6만원/1일당(최대 2개월까지 지급)

- 화재, 풍수재 사고로 인해 휴업을 하게 된 경우 명시한 보상금액을 일당으로 지급

풍 수 재 :  5백만원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손해를 보상

## 3. 재난보상 플랜

- 재난 취약시설 내 화재/붕괴/폭발 등으로 인한 제3자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2 해당 시설

면적 : \_\_\_\_\_ m<sup>2</sup> ※ 건축물대장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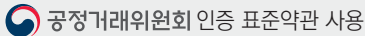
20      년      월      일

고객(신청인) :

(인)

주식회사 에스원 귀중

# 시스템경비 약관 INDEX

<b>제1편 기본계약조건</b>		
제 1 장	총칙	2
제 2 장	서비스 제공 및 시설물 관리	3
제 3 장	보증금, 월 서비스료, 비용 등	4
제 4 장	계약의 종료	5
<b>제2편 회사의 제공 서비스</b>		
제 1 장	총칙	6
제 2 장	방법 서비스	6
제 3 장	비상통보 서비스	7
제 4 장	화재이상통보 서비스	7
제 5 장	설비이상통보 서비스	7
제 6 장	설비연동 서비스	8
제 7 장	방법이상통보 서비스(Information)	8
제 8 장	출입통제 및 출입관리 서비스	8
제 9 장	근태관리/식당관리 서비스	8
제10장	영상기기 렌탈서비스	9
제11장	영상확인 서비스(공동주택 전용 시스템)	9
제12장	가스차단 서비스(공동주택 전용 시스템)	9
제13장	대기전력차단 서비스(공동주택 전용 시스템)	10
제14장	전등제어 서비스(공동주택 전용 시스템)	10
제15장	생활감지통보 서비스(공동주택 전용 시스템)	10
<b>제3편 특별약관</b>		
제 1 장	면책구역 특별약관	11
제 2 장	SINET 이용 특별약관	11
<b>제4편 종합안심플랜 약관</b>		
제 1 장	총칙	13
제 2 장	일반 스페셜보상 특별약관	13
제 3 장	화재복구 지원금 특별약관	14
제 4 장	홈 스페셜보상 특별약관	15
제 5 장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스페셜보상 특별약관(공동주택 전용 시스템)	16
제 6 장	화재보상 특별약관	18
제 7 장	유리손해 특별약관(실손보상)	18
제 8 장	전기적 손해 특별약관(실손보상)	19
제 9 장	급배수설비누출손해 특별약관(실손보상)	19
제10장	점포휴업(화재) 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20
제11장	풍수재위험 특별약관	21
제12장	이웃배상 특별약관	21
제13장	재난보상 특별약관	23

# 기본계약조건

## 제1편 기본계약조건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경비구역 내의 대상물에 대하여 시스템경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식회사 에스원(이하 '회사'라 합니다)과 위 서비스를 제공받는 이용자(이하 '고객'이라 합니다)사이에서 체결된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서비스'란 회사가 이 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하는 업무(시스템경비 및 이에 부속되는 업무)를 말합니다.
2. '시스템경비'란 고객의 경비구역에 회사의 기기를 부착하고 통신회선(공중회선, 전용회선, 무선망, 인터넷 등)을 통하여 회사의 관제센터와 연결, 이상발생 시 회사의 출동요원이 현장에 출동하거나 또는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사고의 조기발견 및 확대를 방지하는 시큐리티시스템을 말합니다.
3. '대상물' 또는 '경비대상물'이란 약정된 서비스로 보호될 수 있는 고객의 인명(고객 및 고객의 동거가족, 피용자의 인명)과 재산(고객 및 고객의 동거가족의 재산)을 말합니다.
4. '경비대상처'란 경비구역이 위치하는 건물 등을 말합니다.
5. '경비구역'이란 경비대상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회사의 기기가 이상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특정범위의 구역을 말합니다.
6. '이상신호'란 경비구역의 이상상황이나 설치기기의 오작동 등으로 인해 감지된 신호를 말합니다.
7. '기기'란 약정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경비구역에 설치한 회사, 고객의 기기를 말합니다.
8. '사고'란 제3자의 행위 또는 서비스 제공에 반하는 행위로서 대상물에 가해지는 위해(危害)를 말합니다.
9. '긴급대처'란 이상신호에 대해 회사가 취하는 안전조치를 말합니다.
10. '설치공사'란 회사가 경비대상처에 설치하는 기기의 부착 및 배선설치를 말합니다.
11. '출동요원'이란 회사의 임직원으로서 회사가 인정하는 신분증을 소지한 자를 말합니다.
12. '긴급연락처'란 회사가 이상신호를 접수하거나 실상황임을 확인한 경우 등 고객에게 연락하기 위해 고객으로부터 접수한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한 자의 연락처를 말합니다.
13. 'SINET'이란 회사의 MVNO 무선망을 말합니다.

#### 제3조 약관의 명시·설명 의무

회사는 계약체결 시 이 약관을 고객에게 명시하고 다음 각 호의 규정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1. 계약증서에 기재된 사항
2. 이 약관 제4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제18조 내지 제25조

#### 제4조 계약기간

- ① 이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단, 월 서비스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회사가 고객에게 기기를 설치하고 고객이 정상적으로 사용한 시점인 경비개시일로부터 기산합니다.
- ② 이 계약의 계약기간은 경비개시일로부터 계약증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 ③ 회사는 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계약만료일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④ 회사가 제③항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의 연장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회사에 하지 아니하면 계약만료일로부터 1년간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는 뜻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 ⑤ 회사가 서면에 의한 계약만료일의 통지를 제③항에서 정한 기한 후에 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한 날로부터 1개월 후의 날을 계약만료일로 합니다. 또한 고객은 제④항의 통지를 받기 전까지 본래의 계약만료일 이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 계약해지로 인한 제8조 제②항 단서의 확인된 설치비용, 제10조 제③항의 철거비용과 제25조 제①항의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⑥ 회사가 제⑤항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1. 본래의 계약만료일
  2. 변경된 계약만료일
  3. 고객은 '본래의 계약만료일'로부터 '변경된 계약만료일'까지 회사가 제공하는 종전의 서비스를 이용료의 부담 없이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뜻
  4. 고객이 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의 연장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회사에 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변경된 계약만료일'로부터 1년간 자동 연장된다는 뜻

#### 제5조 기기설치 전 계약의 임의해제권

- ① 고객은 회사가 기기 설치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② 제①항의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보증금을 계약해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고객에게 반환합니다.  
회사가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연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 ③ 회사의 기기설치가 착수된 이후 경비개시 이전에 고객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보증금에서 회사가 실제 부담한 기성공사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제②항에 따라 반환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실제 부담한 기성공사 비용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객은 그 초과액을 회사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제6조 양도금지 및 비밀유지

- ① 고객과 회사는 서면에 의한 사전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이전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고객이 경비대상물을 양도함에 따라 회사에 동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②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알게된 고객의 관련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 제2장 서비스 제공 및 시설물 관리

### 제7조 경비계획

- ① 회사는 고객에게 서비스 내용을 설명하고, 고객과 협의하여 경비계획을 확정합니다.
- ② 경비계획이 잘못되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 제8조 기기의 대여 및 설치

- ①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기를 고객에게 대여하여, 경비구역 내에 설치합니다.
- ② 제①항에 따라 설치 시 소요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는 고객과 협의하여 계약기간 사용을 조건으로 설치비용을 할인한 경우에는, 제23조 제②항 또는 제24조에 따른 계약해지 시,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할인된 설치비용 (실제 소요 설치비-고객이 할인약정에 따라 지급한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유지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  
할인된 설치비용의 100%
  2. 계약유지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할인된 설치비용×잔여약정일수/약정일수

### 제9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고객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즉시 통지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불가피한 사유가 종료한 후에 즉시 고객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1. 교통두절, 통신마비,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회사의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로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고객이 서면 또는 콜센터를 통하여 요청한 경우
  4. 고객이 월 서비스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하여 회사가 상당기간을 정하여 대금의 지급을 최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5. 고객의 파산, 도주, 행방불명 등으로 서비스료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명백한 경우
  6. 기타 경비구역 및 서비스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환경 등의 변화가 발생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7. 기타 회사와 고객이 특별히 약정한 경우
- ② 회사는 제①항 각 호의 서비스 중지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고객에게 서비스 재개 일시를 통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제10조 기기의 설치, 변경, 철거

- ① 회사는 약정된 기기를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게 설치하며, 설치 후 그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합니다.
- ② 고객의 사정 또는 경비구역·대상물의 서비스 여건의 변화 등으로 경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의 비용부담으로 기기를 변경하거나 추가해야 합니다.
- ③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회사가 설치기기를 철거합니다. 이 경우 고객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고객이 실제 소요된 철거비용을 부담하고, 계약이 만료되거나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회사가 철거비용을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가 설치기기의 철거를 부담하게 지체하는 경우에는 고객은 기기를 임의로 철거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가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기기의 설치, 변경 및 철거 시 고객과 협의하여 경비대상처의 구조물 등에 손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⑤ 기기의 철거 시 대상물 등에 잔존하는 흔적이나 변경에 대하여 회사는 대상물의 외형 및 그 통상의 기능에 장애가 없도록 원상회복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수인(受忍)할 수 있는 정도의 경미한 것이거나 기술상 불가피한 최소한의 흔적이나 변경, 기기 설치 시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제11조 경비계획의 변경

- ① 고객은 경비구역 혹은 경비대상처의 증축, 개축, 구조·용도 변경, 이전 등으로 인해 경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 15일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 ② 고객은 경비구역에 인접한 건물의 구조 등 주위 상황의 변화로 인해 경비계획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단,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은 구두로 통지할 수 있으며, 그 후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③ 회사는 경비대상처 등의 서비스 여건이 변경되어 경비계획의 실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 때에는 제①항 또는 제②항에 따른 통지를 받지 않고도 고객과 협의를 거쳐 경비계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④ 경비계획의 변경에 따라 소요되는 추가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제12조 기기의 관리 및 담보책임

- ① 회사는 기기를 점검·보수·정비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 ② 고객은 회사의 정상적인 서비스 수행이 가능하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기기를 관리 해야합니다. 고객은 설치기기의 세트, 해제, 비상통보 등 반드시 필요한 사항만 지정된 조작순서에 따라 해야 하며 변조, 위치변경, 훼손, 비정상적인 조작, 감지기 등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장애물의 배치·적재 등을 해서는 안됩니다.
- ③ 제②항에 규정된 고객의 이용상 의무는 고객의 가족·피용자에게도 적용됩니다.



# 기본계약조건

- ④ 회사는 기기의 점검, 보수, 정비 등을 해야 하는 경우 회사의 출동요원 또는 회사가 지정한 사람의 경비구역 및 경비대상처에 출입을 사전에 요청해야하며 고객은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출입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회사가 발급한 신분증 또는 위임장을 휴대하여 고객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 ⑤ 고객은 제②항 또는 제③항의 의무를 위반하여 기기를 멸실, 훼손, 분실한 경우에는 제①항에 따른 회사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배상해야 합니다.
- ⑥ 고객의 책임없는 사유로 기기의 멸실, 훼손, 분실, 기능상의 고장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은 회사에 일정한 기간을 정해 무상으로 수리 및 부품교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13조 열쇠 및 카드의 관리·보관

- ① 고객은 회사의 출동 요원 등이 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열쇠를 회사에 제공하여야 하고, 회사는 고객에게 그 보관증을 교부합니다. 또한 회사는 고객에게 설치기기의 조작용 카드를 교부하여야 하고, 고객은 그 카드를 관리·보관합니다.
- ② 고객은 제①항에 따라 회사에 교부한 열쇠나 개폐장치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회사에 지체없이 통지하고 제①항에서 정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①항에 따라 제공받은 고객의 경비대상물 등의 열쇠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합니다.
- ④ 제①항, 제②항에 따라 각자 관리하는 열쇠 또는 카드를 분실한 때에는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그 분실로 인해 발생한 제 비용과 사고의 책임은 분실한 측이 부담합니다. 다만, 고객이 카드의 분실을 회사에 통지한 후에 회사의 고의 및 과실로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회사가 책임을 부담합니다.
- ⑤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의 만료에 의하여 종료된 때에는 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는 열쇠 또는 카드를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반환합니다.
- ⑥ 기기를 카드가 아닌 지문, 비밀번호 등으로 조작함에 따라 고객의 책임 하에 지문, 비밀번호의 등록, 삭제 등 시스템 운용이 이루어지는 경우 시스템 운용상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14조 시설보완의 협조

- ① 회사는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경비구역 및 그 주변시설의 보완, 개선 및 필요한 조치를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고객은 제①항에 따른 회사의 요청에 신속히 협조해야 합니다.

## 제3장 보증금, 월 서비스료, 비용 등

### 제15조 보증금

- ① 고객은 계약체결시에 약정한 소정의 보증금을 회사에 예치해야 합니다. 단, 이 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합니다.
- ②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계약만료일 또는 계약해제(해지)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예치한 보증금을 이자 없이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지연기간에 따라 연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함께 지급합니다.

- ③ 제②항의 경우에 회사는 고객이 회사에 지급해야 할 비용이나 위약금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제16조 월 서비스료

- ① 고객은 매월 약정한 일자에 약정한 서비스료를 회사의 지정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 ② 1개월 이하의 서비스료는 서비스의 제공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합니다. 다만, 이 경우 1개월은 30일로 합니다.
- ③ 고객은 제9조에서 정한 정지기간 등의 경우에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되지 못한 일수에 대해서는 서비스료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④ 경비구역, 경비대상물 또는 설치기기의 변경이 있을 시에는 회사와 고객이 합의하여 월이용료를 조정합니다.

### 제17조 통신회선 사용료

- ①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통신회선(공중회선, 전용회선, 무선, 인터넷 등) 사용료는 고객이 부담하며 월 서비스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② 제①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고객과의 약정 시 전용회선 등의 통신회선 사용료를 월 서비스료에 포함시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통신회선 사용료의 변경 시에는 그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해당금액에 상응하여 월 서비스료를 조정합니다.
- ③ 제②항의 경우 계약기간 중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서비스가 중지된 때에는 서비스 재개일까지의 통신회선 사용료 등은 해당 통신회사의 관련 약관규정 또는 시스템경비 약관 제3편 제2장 S1NET 이용 특별약관에 따라 고객이 부담합니다.

### 제18조 출동료

- ① 고객 또는 고객의 피용자 등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상신호가 발생하여 회사의 출동요원이 긴급대처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객은 약정된 출동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 ② 약정된 서비스 이외의 사유로 출동을 요청하여 회사의 출동요원이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에도 전항과 같습니다.

### 제19조 경비계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 ① 회사는 약정한 경비개시일로부터 계약만료일 또는 계약해지일까지 경비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경비 대상물에 손해가 발생하면 「민법」 제393조 및 제396조에 의해 산정된 손해액(계약체결 시 별도로 약정한 한도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상한으로 함)을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② 제9조에 따라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경비대상물의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는 배상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고객에게 서비스 중지사유, 기간 및 경비대상물의 손해에 대한 면책을 고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발생·확대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집니다.  
 ③ 회사는 보험에 가입하여 제①항과 제②항에 따라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합니다.

**제20조 귀금속 등의 손해배상**

① 고객은 방법 서비스 제공시간 중 현금, 유가증권(수표, 상품권, 주권, 채권, 어음 등), 아래 표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귀금속류(금제품, 보석류) 및 개당 15만원 이상의 시계류, 광파기 등의 귀중품은 「회사가 제공한 금고감지기」가 부착된 금고 내에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귀중품의 보관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금고 이외의 특별한 금고(특별한 장치나 크기를 갖춘 금고, 불박이 금고, 은행금고 등)를 마련하여야 할 의무는 지지 아니합니다.

구 분	귀금속 판매·관리 업종	주 택	기 타
개당 매입단가	1만원	30만원	15만원

② 제①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상합니다.

**제21조 고객의 면책**

고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1. 회사의 요원 또는 그 보조원이 서비스를 수행하는 중 입은 손해
2. 기기의 자연발생적 고장 혹은 오작동으로 인한 손해
3. 기타 면책특약의 사항

**제22조 회사의 면책**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항에 대해서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2호와 제7호 내지 제10호에 해당하고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사변, 폭동, 쟁의행위,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2.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기기의 멸실, 훼손, 고장 등으로 정상작동이 되지 않아 발생한 손해
3. 약정된 경비구역 및 대상물 이외에 발생한 손해
4. 경비대상물이 있는 시설이나 건물의 외측(벽, 유리, 셔터, 창문 등) 부분에 발생한 손해
5. 경비해제 중 감지기가 설치된 유리가 파손되었으나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통보받지 못해 발생한 손해
6. 제9조의 서비스 제공이 중지의 경우에 고객이 회사로부터 서비스 중지사유, 기간 및 경비대상물의 손해에 대한 면책을 고지 받은 후에 발생한 손해
7. 회사의 출동요원이 계약상 약정된 서비스 이외에 고객의 특별한 요구에 의한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
8. 제11조의 경비계획 변경사유 발생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9. 고객이 제13조의 열쇠 및 카드의 관리·보관업무 또는 제14조의 시설보완의무에 협조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
10. 기타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

**제4장 계약의 종료**

**제23조 고객의 해제·해지권**

- ① 고객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약정한 일시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제9조 제①항에서 정한 서비스 중지사유가 종료하고도 즉시 경비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3. 회사가 제12조 제⑥항에서 정한 기기의 수리 등을 한 후에도 동일·유사한 고장이 반복되는 경우
  4.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이 약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
  5. 회사가 약정한 서비스를 소홀히 하고 있거나 소홀히 할 우려가 있어 고객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약정한 서비스 제공 및 적합한 조치를 취할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은 경우
- ② 고객은 제①항 이외의 경우에도 경비개시 후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은 서면 또는 콜센터(1588-3112)를 통하여 해지희망일까지 갑에게 계약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②항의 해지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해지 신청 접수사실 및 해지절차를 안내하고, (단, SMS 안내는 필수) 계약해지의 효력은 해지희망일에 발생합니다.
1. SMS
  2. 전화
  3. E-mail
  4. 기타 서면 등

**제24조 회사의 해제·해지권**

- ① 회사의 경비개시 및 서비스 중지 후 재개 예정일에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경비개시가 불가능하게 되는 때에는 회사는 상당기간을 정해 고객에게 협조를 최고하고,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고객이 불응하면 회사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고객이 월 서비스료 등의 지급을 지체하는 때에는 회사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고객에게 그 지급을 최고하고, 이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고객이 그 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제①항 또는 제②항의 경우에 고객이 회사에 사전통지 없이 부재상태에 있고, 회사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고객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도 회사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위약금**

- ① 제23조 제②항이나 제24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고객은 회사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잔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치 월 서비스료 총합의 10%
  2. 잔여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잔여 계약기간 월 서비스료 총합의 10%
- ② 제23조 제①항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 회사의 제공 서비스

합니다.

1. 잔여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년치 월 서비스료 총합의 10%
2. 잔여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잔여 계약기간 월 서비스료 총합의 10%

## 제26조 기타

-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고객과 회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합의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공정·타당한 일반 거래관행에 따릅니다.
- ② 이 약관의 변경 및 수정은 고객과 회사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 ③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 제2편 회사의 제공 서비스

※ 아래 업무중 신청서에 기재된 서비스만 제공합니다.

### 제1장 총칙

#### 제1조 서비스의 제공

본 편에 따라 회사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고객이 선택하여 계약증서에 기재된 서비스에 한합니다.

#### 제2조 긴급연락처의 등록, 변경

- ① 회사는 경비개시 시 고객 또는 고객이 지정하는 자를 긴급연락처로 등록합니다.
- ② 긴급연락처의 변경은 고객 또는 기존에 긴급연락처로 등록된 자의 요청으로 변경이 가능하며, 이 때 회사는 긴급연락처 변경을 요청하는 자의 등록여부를 확인하고, 긴급연락처를 변경합니다.
- ③ 고객은 등록된 긴급연락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하며, 고객이 본 항의 통보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제3조 통보 서비스의 범위

- ① 본 편의 서비스 중 **비상통보, 설비이상통보, 방범이상통보, 생활감지통보 서비스**는 회사가 이상신호 수신 시 고객(경비대상처 또는 긴급연락처, 이하 동일), 경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는 서비스로 회사의 **출동요원은 출동하지 않습니다.**  
다만, 화재이상통보 서비스는 실상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 시 회사의 출동요원이 출동할 수 있습니다.
- ② 제①항의 각종 통보 서비스는 통보 함으로써 회사의 의무는 이행이 완료되며, 이하 각 장에 따라 통보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4조 자료의 제공

회사는 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수신한 이상신호, 녹화영상 등 고객의 정보를 수사기관 등에서 요청할 경우 고객의 별도 동의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2장 방법 서비스

#### 제5조 서비스 정의

방법 서비스라 함은 경비구역의 경비대상물에 대한 도난의 조기발견 및 도난피해 확대방지를 위한 업무를 말합니다.

#### 제6조 서비스 내용

- ① 회사의 서비스 제공시간은 고객이 정상적으로 기기를 작동개시 (이하 '세트'라 함)한 때부터 작동해제(이하 '해제'라 함)한 때까지로 합니다.
- ② 회사는 경비구역으로부터 이상신호가 수신되면 즉시 출동요원을 경비구역에 출동시켜 사태를 확인 후 실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경찰에 통보합니다.

- ③ 회사는 실상황 발생시 고객이 지정한 긴급 연락처에 즉시 통보하고, 고객에게 현장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고객의 의무**

- ① 고객은 세트하기 전에 경비구역 내에 사람이 남아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창문 및 출입문의 잠금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 ② 회사는 고객이 제①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손해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8조 손해배상**

방범 서비스 대한 손해배상은 제1편 기본계약조건의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르며, **손해배상한도액은 계약증서에 기재된 한도액으로 합니다.**

**제3장 비상통보 서비스**

**제9조 서비스 정의**

비상통보 서비스라 함은 고객이 긴급상황 발생시 비상통보 버튼을 누르면 이를 수신하여 실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경찰에 통보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제10조 서비스 내용**

- ① 회사는 고객의 비상통보 버튼 작동에 따른 신호를 수신하면 경비대상처로 즉시 상황을 확인합니다.
- ② 회사는 실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경찰에 통보합니다.
- ③ 비상통보 서비스는 하루 24시간 제공합니다.

**제11조 손해배상**

- ① 회사는 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고객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 ② 제①항에 따른 손해배상 한도액은 **대인 2천만원, 대물 2천만원으로 합니다.**

**제4장 화재이상통보 서비스**

**제12조 서비스 정의**

화재이상통보 서비스라 함은 회사 또는 고객의 기기에 의해 감지된 이상신호를 수신하여 고객에게 통보하고, 실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소방서에 통보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제13조 서비스 내용**

- ① 회사는 회사 또는 고객의 기기에 의해 감지된 이상신호를 수신한 경우 고객에게 즉시 연락하여 화재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소방서에 통보합니다.
- ② 회사는 **고객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연락이 되었으나 화재 발생 여부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출동요원을 출동시켜 상황을**

**확인하게 하고, 실상황이라고 판단되면 즉시 소방서에 통보합니다.**

- ③ 화재이상통보 서비스는 하루 24시간 제공합니다.

**제14조 회사의 면책**

- ① 회사가 제13조(서비스 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발생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② 회사가 이 서비스를 위해 고객의 소방시설로부터 이상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고객의 기기 사이 단선 등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상신호를 수신하지 못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③ 회사가 취한 응급조치로 인해 발생된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5조 고객의 의무**

- ① 고객은 고객이 설치한 화재/소방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그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야 하며, 회사가 설치한 기기의 훼손, 단선 등 정상작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② 고객은 세트 전에 화재발생의 위험이 있는 전열기 등의 전원을 끄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고객이 제①, ②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제16조 손해배상**

- ① 회사는 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고객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 ② 제①항에 따른 손해배상 한도액은 **대인 2천만원, 대물 2천만원으로 합니다.**

**제5장 설비이상통보 서비스**

**제17조 서비스 정의**

설비이상통보 서비스라 함은 회사 또는 고객의 기기를 통해 경비구역 내의 정전, 누수 등의 설비이상을 감시하고, 이상신호 수신 시 고객에게 즉시 통보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제18조 서비스 내용**

회사는 고객의 설비로부터 이상신호를 수신하면 경비대상처 또는 긴급연락처로 즉시 상황을 통보합니다.

**제19조 회사의 면책**

- ① 회사가 이 서비스를 위해 고객의 기기로부터 이상신호를 수신하는 경우 고객 기기의 결함 또는 고객 기기와 회사 기기 사이에서 단선 등으로 이상신호를 접수하지 못해 발생된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② 회사가 제18조(서비스 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였음에도 발생한 고객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회사의 제공 서비스

## 제20조 고객의 의무

- ① 고객은 고객의 책임하에 있는 설비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해야 하며, 정기적인 보수점검을 한 후 보수점검 결과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제21조 손해배상

- ① 회사는 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고객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 ② 제①항에 따른 손해배상 한도액은 대인 2천만원, 대물 2천만원으로 합니다.

## 제6장 설비연동 서비스

### 제22조 서비스 정의 및 내용

설비연동 서비스라 함은 회사의 기기와 고객의 설비기기를 연결한 후, 회사의 기기를 세트, 해제함으로써 고객의 연동 설비기기를 작동 또는 정지시키는 업무를 말합니다.

### 제23조 고객의 의무

고객은 연동설비기거나 연결선로의 이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신속히 수리, 복구해야 합니다.

### 제24조 손해배상

- ① 회사는 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고객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 ② 제①항에 따른 손해배상 한도액은 대인 2천만원, 대물 2천만원으로 합니다.

## 제7장 방법이상통보 서비스(Information)

### 제25조 서비스 정의

방법이상통보 서비스라 함은 경비구역의 침입 이상을 감시하고, 이상신호 수신 시 고객에게 통보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제26조 서비스 내용

회사는 이상신호를 수신하면 경비대상처 또는 긴급 연락처로 즉시 통보합니다.

### 제27조 적용제외

시스템경비 약관 제1편 기본계약조건 중 회사의 출동과 관련된 내용(제1편 제13조, 제18조 등)은 방법이상통보 서비스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28조 손해배상

- ① 회사는 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고객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 ② 제①항에 따른 손해배상 한도액은 대인 2천만원, 대물 2천만원으로

합니다.

## 제8장 출입통제 및 출입관리 서비스

### 제29조 서비스 정의 및 내용

- ① 출입통제 및 출입관리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고객의 출입문 등의 시설물에 전기 개폐장치를 설치하고 이를 회사의 설치기기에 연결하여 등록된 사람만이 카드, 지문 등으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통제, 관리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② 고객의 출입문 등의 시설물에 설치한 전기 개폐장치는 정전시 자동 개방되는 구조입니다.

### 제30조 고객의 의무

고객은 회사가 설치한 기기 외에 고객의 시설물 및 설치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 제31조 회사의 면책

회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경비구역의 정전 또는 화재로 인하여 출입문 등이 자동개방되는 동안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 제32조 손해배상

- ① 회사는 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고객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 ② 제①항에 따른 손해배상 한도액은 대인, 대물 합하여 총 5백만원으로 합니다.

## 제9장 근태관리/식당관리 서비스

### 제33조 서비스 정의 및 내용

근태관리/식당관리 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고객에게 근태관리/식당관리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회사의 기기와 연계하여 고객이 근태관리/식당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제34조 고객의 의무

고객은 근태관리/식당관리를 위해 사용하는 고객의 컴퓨터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제35조 손해배상

- ① 회사는 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소프트웨어의 하자 등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고객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 ② 제①항에 따른 손해배상 한도액은 대인, 대물 합하여 총 5백만원으로 합니다.

## 제10장 영상기기 렌탈서비스

### 제36조 서비스 정의 및 내용

영상기기 렌탈서비스라 함은 회사가 고객에게 영상기기를 대여, 설치하여 고객이 영상을 통해 원하는 구역을 감시·녹화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제37조 기기의 수리

- ① 고객은 고객의 책임 하에 영상기기를 운영·관리해야 하며, 영상기기에 이상이 발생하여 수리가 필요한 경우 회사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①항의 통보를 받은 경우 통보를 받은 다음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영상기기를 수리·복구해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②항의 기간 내에 수리복구가 불가능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고객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편 기본계약조건 제9조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이 중지되는 경우, 고객은 영상(녹화)기기를 사용할 수 없으며, 회사는 이를 위하여 영상(녹화)기기에 잠금장치 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단, 중지기간이 종료되면 회사는 즉시 해당 잠금장치 등을 제거하여 고객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⑤ 회사의 책임없는 사유로 발생한 설치기기의 고장, 훼손 또는 일부 분실의 수리복구 비용 및 기기 사양의 변경, 하드디스크(HDD) 추가 등이 필요할 경우 그 비용은 고객의 부담으로 합니다.

### 제38조 위약금

- ① 계약기간 중 임의로 본 서비스를 해지하는 경우 고객은 회사에 잔여계약기간 월 서비스료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② 본 서비스에 대한 위약금은 제1편 기본계약조건 제25조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 제39조 회사의 면책

회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1. 제37조 제②항 내지 제③항의 수리기간 동안 영상기기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손해
2. 영상기기 자체의 하자, 설치상 하자 등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직접 손해 외에 영상조회 또는 녹화가 되지 않는 동안 발생한 도난, 화재 등으로 인한 손해

### 제40조 손해배상

- ① 회사는 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고객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 ② 제①항에 따른 손해배상 한도액은 대인, 대물 합하여 총 5백만원으로 합니다.

## 제11장 영상확인 서비스(공동주택 전용 시스템)

### 제41조 서비스 정의

영상확인 서비스라함은 세콤IP카메라가 내장된 세콤영상리모콘이나 별도의 IP카메라를 통하여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경비구역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제42조 서비스 내용

- ① 고객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경비기기에 접속하여 경비구역의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② 이 서비스에 사용되는 데이터 통신 요금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 제43조 회사 및 고객의 의무사항

- ① 고객은 이 서비스를 경비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② 고객은 인터넷 회선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해야 하며, 인터넷 회선의 장애 등으로 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 제44조 손해배상

- ① 회사는 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고객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합니다.
- ② 제①항에 따른 손해배상 한도액은 대인, 대물 합하여 총 5백만원으로 합니다.

## 제12장 가스차단 서비스(공동주택 전용 시스템)

### 제45조 서비스의 정의

회사는 고객의 가스 콕에 가스차단기를 설치하여 세트 시 또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가스밸브상태를 무선으로 조회하거나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제46조 서비스 내용

- ① 고객이 외출 시 기기를 세트하면 자동으로 가스가 차단됩니다.
- ② 고객이 스마트폰을 사용하여 가스밸브상태를 조회하거나 가스차단을 할 수 있습니다.

### 제47조 기타사항

- ① 고객은 가스차단기와 전원어댑터가 분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원어댑터가 분리되어 이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 ② 가스밸브 열림조작은 수동으로만 가능합니다.

### 제48조 손해배상

- ① 회사는 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고객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합니다.
- ② 제①항에 따른 손해배상 한도액은 대인, 대물 합하여 총 5백만원으로 합니다.

# 회사의 제공 서비스

## 제13장 대기전력차단 서비스(공동주택 전용 시스템)

### 제49조 서비스의 정의

회사가 제공하는 절전콘센트를 설치하여 불필요하게 소모되는 전력을 차단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제50조 서비스 내용

- ① 대기전력차단 서비스는 절전콘센트를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 ②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절전콘센트의 상태를 조회 및 제어하여 불필요한 전력낭비를 차단합니다.

### 제51조 기타사항

- ① 기기를 절전콘센트의 무선부분에 연결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 ② 기기의 전원이 차단되어 경비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 제52조 손해배상

- ① 회사는 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고객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합니다.
- ② 제①항에 따른 손해배상 한도액은 대인, 대물 합하여 총 5백만원으로 합니다.

## 제14장 전등제어 서비스(공동주택 전용 시스템)

### 제53조 서비스의 정의

회사가 제공하는 별도의 전등스위치를 설치하여 스마트폰으로 전등 ON/OFF를 제어하는 서비스입니다.

### 제54조 서비스 내용

- ① 전등제어 서비스는 전등스위치를 별도로 설치해야 합니다.
- ② 고객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원격으로 전등 ON/OFF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 ③ 고객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전등 ON/OFF에 대한 별도의 스케줄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 ④ 고객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세트 시 전등이 자동꺼짐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제55조 손해배상

- ① 회사는 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고객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합니다.
- ② 제①항에 따른 손해배상 한도액은 대인, 대물 합하여 총 5백만원으로 합니다.

## 제15장 생활감지통보 서비스(공동주택 전용 시스템)

### 제56조 서비스 정의

생활감지통보 서비스라 함은 고객이 생활감지구역에서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움직임이 없을 경우 이상신호를 수신하여 고객이 지정한 긴급연락처에 통보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 제57조 서비스 내용

- ① 회사는 고객의 생활감지통보 신호를 수신하면 지정한 긴급연락처나 의료기관에 즉시 통보합니다.
- ② 생활감지통보 서비스는 재택경비 중에만 제공합니다.

### 제58조 손해배상

- ① 회사는 본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 ② 제①항에 따른 손해배상 한도액은 대인 2천만원, 대물 2천만원으로 합니다.



# 특별약관

## 제3편 특별약관

### 제1장 면책구역 특별약관

#### 제1조 면책구역의 범위

면책구역이란 회사가 경비구역으로 설정할 수 없는 구역을 고객의 요청에 따라 회사의 기기를 설치한 구역으로 외부로부터의 침입 시 회사가 완벽하게 이상신호를 수신할 수 없는 구역을 말합니다.

#### 제2조 면책구역의 운용

- ① 회사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제1조의 면책구역에 설치한 기기로부터 이상신호를 감지하면 본 시스템경비 약관 제2편 제2장 제6조 (서비스 내용)의 내용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② 회사는 제3조에 규정된 경우 이외에는 면책구역에서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제3조 손해배상

회사는 제2조 제①항에 따라 면책구역에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해 고객에게 발생한 손해를 제1편(기본계약 조건)에 따라 배상합니다.

- 1. 침입자가 회사의 기기가 설치된 곳을 통해 침입하였으나 기기 자체의 결함 또는 기기 관리상의 잘못 등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기기가 작동하지 않아 도난손해가 발생·확대되었음이 입증된 경우(예를 들어, 침입자에 의해 기기가 임의로 조작되어 그 작동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 감지기가 설치된 곳을 뛰어넘거나, 밀로 기어서 면책구역 내부로 침입하여 기기가 작동하지 않은 경우, 면책구역 내부로 침입하지 아니하고 외부에서 감지기를 피해 대상물을 절취하여 기기가 작동하지 않은 경우 등은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 2. 침입자가 면책구역 내로 침입하여 회사가 이상신호를 접수하였으나,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정상적인 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 도난손해가 발생·확대되었음이 입증된 경우

※ 제2장 및 제4편 종합안심플랜 약관의 보상은 회사가 보험사와 제휴하여 고객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사정에 따라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경비개시 이후부터 적용되고, 월 서비스료 연체 또는 서비스 중지 시 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제2장 S1NET 이용 특별약관

#### 제4조 목적

이 약관은 회사와 회사의 S1NET(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합니다)을 이용하는 고객과 사이에 데이터 통신 서비스(이하 '통신서비스'라 합니다)의 이용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제5조 이용정지

- ① 회사는 고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1.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위반시
- 2. 「전파법」 제19조(허가를 통한 무선국 개설 등) 위반시
- 3. 개인고객이 사망하거나, 법인 고객이 폐업 또는 사업의 일부나 전부가 폐업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폐업에는 파산, 부도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 ② 회사는 이 약관에서 정한 고객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용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 일시 및 기간을 정하여 이용정지 7일전까지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해당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단, 해당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③ 제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정지의 통지를 받은 고객은 그 이용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시에는 방문, 전화, 팩스 등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고객이 이용요금을 완납한 경우 이외에 임의로 이용정지를 해제할 수 없습니다.

#### 제6조 이용의 휴지 및 폐지

- ① 회사는 시스템 개선 설치, 장비증설, 시설관리 및 운용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경우, 고객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사전통지하고 통신서비스의 이용을 휴지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해소시 즉시 통신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경영상의 환경, 행정기관의 처분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통신서비스를 폐지하는 경우 고객에게 통신서비스를 중단하기 30일 이전에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고지하여야 합니다.

#### 제7조 침해사고 긴급대응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1.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합니다)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당해 통신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접속경로 차단 요구 또는 권고가 있을 경우
  - 2. 외부에서 발생한 침해사고로 인하여 회사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3. 고객의 정보시스템에 발생한 이상현상으로 인하여 다른 고객 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에 심각한 장애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거나, 장애발생에 대한 원인파악을 위해 차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 4. 국가 비상사태,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통신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② 회사는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하는 때에는 중지사유, 발생 일시, 기간, 내용 등을 명시하여 고객에게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단, 이상현상의 확산속도로 보아 고객에게 사전통지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등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전통지 없이 중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중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즉시 당해 통신서비스의 제공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 특별약관

## 제8조 고객의 보호조치

- ① 회사는 정보통신망에 중대한 침해사고가 발생하여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정보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 등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제47조의4 제②항에 의거하여 당해 고객에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고, 당해 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정보통신망 또는 집적정보보호 시설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이상 징후를 감지한 경우, 고객에게 긴급하게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며, 요청방법은 비상연락망을 통한 유무선 통신(홈페이지 공시 또는 E-mail, fax, SMS, POP-Up 등)을 이용합니다.
- ③ 고객이 취할 보호조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만약 고객이 침해사고에 대한 조치능력이 없을 경우 고객은 회사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기기에 대한 보안점검
  2. 관련 원인 점검 및 사후 보안 조치 실시
  3. 침해사고 유형 또는 이상현상의 상태에 따라 조치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 ④ 회사는 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아닐 경우, 회사의 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객이 보호조치를 이행했다고 충분히 판단될 때까지 정보통신망으로의 접속 제한을 실시합니다.
- ⑤ 회사는 고객의 정보보호조치 불이행에 대하여 접속제한의 범위는 서비스 포트제거 및 일부의 차단이며, 회사가 이와 관련 부당한 접속 제한을 한 경우 고객은 한국ISP협회(KISPA)의 소정양식에 의거 사유발생 후 1개월 이내에 이의 신청 및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제12조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배상합니다.

## 제9조 침해사고에 대한 면책규정

- ① 회사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별정통신사업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침해사고 등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② 기타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당시 과학 기술수준으로는 결함의 존재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2.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당시의 법령이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하였을 경우

## 제10조 요금

- ① 고객이 납부하여야 하는 기본료는 데이터 등이 기본 제공된 것으로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월정액 요금을 말하며 월 3,500원(부가세 별도)이 적용됩니다.
- ② 이용 요금은 월 서비스료에 포함시켜 청구되며 물가수준, 기간통신사업자의 정책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제11조 요금의 선납

고객은 회사와 약정한 통신서비스 이용 요금을 1개월 선납으로 납부합니다.

## 제12조 통신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처리방안

- ① 고객이 회사의 책임있는 사유로 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 당해 사실을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3시간 이상 통신서비스를 제공 받지 못하거나 또는 1개월 동안의 통신서비스 장애발생 누적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한 경우, 회사는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월정액 요금의 3배에 상당한 금액을 고객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② 회사가 고객으로부터 통신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사실을 통지 받은 경우, 회사는 통신서비스 재개를 위해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이 사실을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상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1. 전선·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
  2. 전파의 직진 및 회절 특성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음영지역 추가발생과 기술진보에 따라 불가피하게 장비의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등 전기통신서비스의 특성상 불가피한 사유로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3. 고객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④ 회사는 고객과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일자 및 시간, 통신서비스 재개를 위한 회사의 조치내역과 서비스 재개시점에 관한 사실을 기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⑤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고객은 청구사유, 청구금액 등을 서면으로 회사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제13조 고객 민원의 접수 및 처리

- ① 고객은 부당요금 청구 등 부당 행위로 인하여 선의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콜센터 및 해당 사업장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 고객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서면 또는 전화 등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 ③ 고객 불만 유형별 처리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데이터 이용 불만: 7일
  2. 통신서비스 품질 불만: 14일
  3. 고객 응대 불만: 7일
  4. 기타: 7일
- ④ 제③항에 따른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콜센터 접수
  2. 유형별 관련 VOC 관리
  3. 처리 방향 및 조치 확정
  4. 고객 통보(유선상 또는 E-mail 등)

## 제14조 회사의 통신서비스 제공 안내

- ①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통신서비스 제공 받기를 희망하는 즉시 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즉시적인 통신서비스 제공이 불가할 경우, 회사가 운영하는

# 종합안심플랜 약관

- 통신서비스 홈페이지 게시 및 콜센터 안내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통신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사유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통신서비스 제공이 가능토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제15조 준용규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계약 기본계약 조건이 준용됩니다.
- ② 통신서비스 제공은 방법 서비스와 함께 자동으로 중지 또는 종료됩니다.

## 제4편 종합안심플랜 약관

### 제1장 총칙

#### 제1조 목적

종합안심플랜은 회사의 시스템경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재산 보호 등을 위하여 제공되는 부가안심서비스로 고객은 회사가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되고, 보험사가 직접 고객에게 보상하여 드리는 상품입니다.

#### 제2조 약관의 적용 및 변동

- ① 종합안심플랜은 회사의 시스템경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종합안심플랜 신청서에서 선택한 서비스에 한하여 경비개시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 단, 고객의 보험가입 동의가 필요한 서비스의 경우 고객이 보험사에 대하여 보험가입 동의를 하여야만 이 약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의무는 보험사에 있으며, 회사는 보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 ② 제휴 보험사의 사정 또는 관련 당국의 지침·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약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③ 월 서비스로 연체, 시스템경비 서비스 중지, 회사의 시스템경비 서비스 계약이 해제·해지로 종료된 경우 보험사는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제3조 서비스 종료 시 보험가입의무

시스템경비 계약이 종료되거나 종합안심플랜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고객이 별도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에 대해 어떠한 법률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특히, 재난보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의무보험에 해당하므로 고객이 별도로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제2장 일반 스페셜보상 특별약관

#### 제4조 보상내용 및 한도

보험사는 일반 스페셜보상 가입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아래의 표에 따라 보상합니다.

구 분	보상내용	보상한도액
일반통신, 현금 유가증권 귀중품 등 도난손해	- 불법침입, 절도, 강도로 인한 도난손해 - 보상한도액 내에서 실손보상	- 종합안심플랜 신청서의 일반 스페셜보상 한도액 중 고객이 선택한 보상한도액
보관시설 파손손해	- 불법침입, 절도, 강도로 인한 파손손해 - 보상한도액 내에서 실손보상	- 종합안심플랜 신청서의 일반 스페셜보상 한도액 중 고객이 선택한 보상한도액의 50%까지

#### 제5조 보상하는 도난손해

보험사는 계약기간 중에 경비대상물이 경비구역 내에 있는 동안에 불법침입자, 절도 또는 강도의 절취행위로 고객이 입은 직접 손해

# 종합안심플랜 약관

(훼손, 망가짐 또는 파손을 포함합니다. 이하 '도난손해'라 합니다)를 제4편 제2장 제4조에 따라 보상합니다.

## 제6조 보상하지 않는 도난손해

보험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고객(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고객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손해
2. 고객의 가족, 친족, 사용인, 동거인, 숙박인 또는 당직자가 일으킨 행위 또는 이들이 가담하거나 묵인하여 생긴 도난손해
3. 지진, 분화, 풍수해,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손해
4. 화재, 폭발이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손해
5. 절도 또는 강도 행위로 발생한 화재 및 폭발손해
6. 영업활동 중에 상점, 영업소, 창고 또는 작업장 내에서 강도에 의하지 아니한 손해
7. 재고조사 시 발견된 손해
8. 망실 또는 분실 손해
9.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10. 도난손해가 생긴 후 30일 이내에 발견하지 못한 손해
11. 보험사의 경비시스템이 작동 해제된 상태로 경비구역을 72시간 이상 비워 둔 동안에 생긴 도난손해
12. 경비대상물이 경비구역을 벗어나 보관되는 동안에 생긴 도난손해
13. 자동차, 오토바이에 발생한 손해. 단, 전차상품일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14. 동·식물에 발생한 손해
15. 회사의 시스템경비 서비스 제공이 중지 또는 해지된 동안에 생긴 도난손해
16. 경비시스템이 작동 해제 시 출입문(창문을 포함합니다)의 잠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도난손해 또는 외부로부터 침입흔적이 없는 도난손해
17. 귀금속 영업점(14K, 18K류 판매 등 액세서리점 포함)의 경우, 영업활동 이외의 시간에 금고 감지기가 부착된 금고 내에 보관되지 않은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류, 매입단가 기준 30만원 이상의 14K, 18K류 및 시계류 등의 귀중품에 발생한 도난손해
18. 면책구역에서의 도난손해

## 제7조 손해발생의 통지 및 조사

- ① 경비대상물에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고객, 고객의 가족, 당직자는 지체없이 이를 관할 경찰서와 보험사에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빠른 시일 내에 보험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객이 회사에 위 손해사실을 알린 경우 회사는 위 손해사실을 보험사에 알릴 수 있습니다.
  1. 도난품 명세서
  2. 관할 경찰서의 도난신고확인서, 그러나 이를 얻기 어려울 때에는 두 명 이상이 연대 보증하는 인근 주민의 확인서
  3. 그 밖의 필요한 증거자료
- ② 고객이 제①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제8조 손해방지 의무

도난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고객은 도난당한 경비대상물의 발견 및 그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절차를 취하는 등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 제9조 손해액의 조사결정

보험사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시점과 장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제10조 보상하는 보관시설 파손 손해

보험사는 불법침입자, 절도 또는 강도가 경비대상물을 절취하기 위해 경비대상물의 보관시설(건물, 금고 및 도난방지 시설을 말합니다)을 파손한 경우 고객이 입은 직접손해(훼손, 망가짐 또는 파손을 포함합니다)를 제4편 제2장 제4조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절취행위에 인해 발생한 화재손해는 원인의 직·간접을 묻지 않고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제3장 화재복구 지원금 특별약관

※ 일반 스페셜보상 가입고객 중 종합안심플랜 신청서에 본 서비스를 기재한 고객만 해당합니다.

## 제11조 보상하는 손해

- ① 보험사는 고객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화재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발생한 손해 중 실손해액을 근거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고객에게 화재 복구 지원금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실손해액이란 화재로 인한 직접손해 및 소방손해액을 말하며,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잔존물은 제외합니다.

(단위: 만원)

실손해액(직접손해 및 소방손해)	화재복구 지원금
300 미만	-
300 이상 ~ 500 미만	100
500 이상 ~ 1,000 미만	300
1,000 이상 ~ 1,500 미만	500
1,500 이상 ~ 2,000 미만	700
2,000 이상	1,000

## 제12조 적용범위

보험사는 경비시스템이 설치된 시설(면책구역 제외)에 발생한 화재손해에 한해 화재복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제13조 실손해액 산출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손해

보험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실손해액 산출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① 고객(법인의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 ② 고객에게 지원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고객과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 ③ 화재가 발생했을 때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④ 고객 소유의 재산이 발효, 자연발열 또는 자연 발화하여 생긴 손해. 그러나 이 결과로 생긴 화재 손해는 포함합니다.
- ⑤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로 생긴 손해. 그러나 이 결과로 생긴 화재 손해는 포함합니다.
- ⑥ 발전기, 여과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 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 손해는 포함합니다.
- ⑦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 ⑧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 ⑨ 위 제⑧항 이외의 방사선 조사(照射)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 ⑪ 발화장소가 경비시설이 속해있는 건물 이외의 화재 사고로 인해 경비대상물이 입은 손해

**제14조 손해의 통지 및 조사**

- ① 고객은 고객의 소유재산에 손해가 생긴 경우, 지체 없이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고객이 제①항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사는 그 증가된 손해는 실손해액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 ③ 보험사가 위 제①항에 대한 손해의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증거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 보험사는 위 제①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사고가 생긴 건물 또는 그 구내와 거기에 들어있는 고객의 소유물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손해방지의무**

화재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고객은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만약, 고객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것으로 밝혀진 값을 실손해액에서 뺍니다.

**제16조 실손해액의 조사결정**

보험사는 실손해액을 그 손해가 발생한 시점과 장소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제17조 타보험과의 관계**

보험사는 화재로 인한 다른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 수령 여부에 관계없이 이 약관에서 정한 화재복구 지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4장 홈 스페셜보상 특별약관**

**제18조 보상내용 및 한도**

보험사의 홈 스페셜보상 가입 고객의 손해에 대해 아래의 표에 따라 보상합니다.

구분	보상내용	보상한도액					
		고객이 선택한 보상한도액					
도난 손해	- 불법침입, 절도, 강도로 인한 도난손해 - 보상한도액 내에서 실손보상	구분	5백만원	1.5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현금등	5백만원	5백만원	6백만원	1천만원	2천만원
		귀중품	2.5백만원	5백만원	1.5천만원	2.5천만원	5천만원
		동산	5백만원	5백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 각 품목의 보상합계액이 고객이 선택한 보상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보관 시설 파손 손해	- 불법침입, 절도, 강도로 인한 파손손해 - 보상한도액 내에서 실손보상	- 종합안심플랜신청서의 홈 스페셜보상 한도액 중 고객이 선택한 보상한도액의 50%까지					
화재 손해	- 화재로 인한 건물 및 가재의 소실손해 - 보상한도액 내에서 실손보상	- 1천만원					

※ 귀중품이란 귀금속류(금제품, 보석류) 또는 점당 300만원 이상으로 무게나 부피가 휴대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생활용품(카메라, 캠코더, 휴대용컴퓨터, 가전제품 등)은 제외

**제19조 준용규정**

홈 스페셜보상은 제4편 제2장 제5조 내지 제10조를 그대로 준용합니다. 다만, 제4편 제2장 제6조 6호를 **주택 내부에 사람이 있던 중 강도에 의하지 아니한 손해**로 수정 적용합니다.

**제20조 보상하는 화재손해**

보험사는 경비대상처의 화재로 인한 건물 및 가재의 소실손해에 대하여 **1천만원 한도내에서 보상**합니다.

**제21조 보상하지 않는 화재손해**

보험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객의 화재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고객(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고객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
2. 고객 또는 고객의 친족,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경비대상물의 발효,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다른 경비대상물이 연소함으로써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동결로 생긴 수도관 또는 수관의 파열로 생긴 손해
5.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6.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7. 핵연료 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 종합안심플랜 약관

물질에 의해서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및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 8. 7호 이외의 방사선 조사 또는 방사능 오염
- 9.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단,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합니다.

## 제5장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스페셜보상 특별약관 (공동주택 전용 시스템)

### 제22조 보상내용 및 한도

보험사는 고객에게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스페셜보상을 적용하여 고객의 손해에 대해 아래의 표에 따라 보상합니다.

보상내용	보상한도액
- 제3자 신체의 장해, 재물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여 발생하는 손해	- 사고당 대인 1억 대물 1억 (자기부담금: 대물 20만원, 대인 없음)

### 제23조 보상하는 손해

- ① 보험사는 제②항에 정한 고객이, 계약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제3자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의 장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이하 '대인 배상책임'이라 합니다) 또는 제3자의 재물의 손해(재물의 없어짐, 손상 및 망가짐을 말합니다)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이하 '대물 배상책임'이라 합니다)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이하 '배상책임손해'라 합니다)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시스템경비 신청서」에 경비대상처로 기재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부지 내의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합니다. 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 2. 고객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합니다)로 인한 우연한 사고
- ② 제①항의 고객이라 함은 「시스템경비 신청서」에 기재된 고객 및 그 동거가족을 말합니다.

### 제24조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보험사가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고객이 피해를 입은 제3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2. 고객이 지출한 아래의 비용
  - 가. 고객이 제29조(손해방지 의무) 제①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나. 고객이 제29조(손해방지 의무) 제①항 제2호의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다. 고객이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라. 본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상하는 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보험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 마. 고객이 제30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보험사의 해결) 제②항 및 제③항의 보험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제25조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① 보험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고객(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4. 핵연료 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5.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② 보험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1. 고객의 직접적인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 2. 제23조 제①항 제1호에 따른 주택을 제외하고 고객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 3. 고객의 피용인이 고객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장해로 인한 사망을 포함합니다)로 인한 배상책임
  - 4. 고객과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5. 고객과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6. 고객이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7. 고객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 8. 고객 또는 고객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 9.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 10.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 11. 불법행위 또는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 제26조 의무보험과의 관계

- ① 보험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31조(스페셜보상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② 제①항의 의무보험은 고객이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 ③ 고객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다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①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 제27조 스페셜보상금 등의 지급한도

- ① 보험사는 1회의 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제24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1호의 손해배상금:  
제22조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24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24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 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 ②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보상총액은 제22조에 기재된 보상한도로 합니다.

## 제28조 손해의 발생과 통지

- ① 고객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서면으로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를 입은 제3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를 입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를 입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 ② 고객이 제①항 각 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하며, 제①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제29조 손해방지 의무

- ① 사고가 생긴 때에는 고객은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보험사의 동의를 받는 일
- ② 고객이 정당한 이유없이 위 제①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

을 때에는 제24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의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①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①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①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 비용과 보험사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 제30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보험사의 해결

- ① 고객이 피해를 입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 그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사에 대하여 스페셜보상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고객이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해당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② 보험사는 제①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사의 요구가 있으면 고객은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 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고객이 피해를 입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아 보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객을 대신하여 보험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의 요구가 있으면 고객은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고객이 정당한 이유없이 제②항, 제③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사는 그로 인해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제31조 스페셜보상금의 분담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보험사는 이 계약에 의한 보상책임액의 전기합계액(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 ②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고객이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①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③ 고객이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상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보험사의 제①항에 의한 스페셜보상금 지급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 종합안심플랜 약관

## 제6장 화재보상 특별약관

### 제32조 보상하는 손해

- ① 보험사는 보험의 목적에 생긴 다음의 손해를 아래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화재로 입은 손해
  2. 폭발 및 파열로 인한 손해
  3. 위 1, 2에 따른 소방 및 피난손해(피난지에서 사고일로부터 보험기간 내의 5일 이내에 생긴 위 1, 2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 ② 보험사는 제①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이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잔존물 제거비용: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의 해체비용, 청소비용(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및 차에 신는 비용. 다만, 제①항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 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2. 손해방지비용: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대위권 보전비용: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4. 잔존물 보전비용: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보험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 한합니다.
  5. 기타 협력비용: 보험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 ③ 아래의 물건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제①항의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2.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3.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형(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4. 실외 및 옥외에 쌓아둔 동산

**【귀중품】** 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 이상

- ④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①항의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인 경우
    - 가. 건물의 부속물: 고객의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공간 및 이와 비슷한 것
    - 나. 건물의 부착물: 고객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 다. 건물의 부속설비: 고객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2. 건물이외 경우: 고객 또는 고객과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생활용품, 집기·비품 등)

### 제33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고객 또는 고객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보험의 목적이 발효,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다른 보험의 목적이 연소함으로써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3. 화재에 기인되지 않는 (동결 등)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4.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5.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6. 전쟁, 외국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7.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8. 위 7.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제34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 ① 보험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실 손해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②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보험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상책임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③ 고객이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보험사의 제②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제7장 유리손해 특별약관(실손보상)

### 제35조 보상하는 손해

보험사는 아래와 같은 사고로 보험의 목적인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이하 '유리'라 합니다)에 생긴 파손의 손해(유리의 부착비용을 포함합니다)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2. 냉해, 수해



3. 다른 물체와의 충돌 또는 접촉
4. 파열 또는 폭발
5. 제3자의 비행 또는 과실
6. 그 밖의 돌발적인 사고

**제36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보험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1. 계약을 맺을 때 이미 금이 가거나 그 밖의 흠이 있던 유리에 생긴 손해
  2. 부착 후 7일 이내에 생긴 부착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
- ② 보험사는 유리를 부착시킨 틀(액자)이나 그 밖의 유리 이외의 물건에 대한 손해 또는 유리의 파손으로 사람, 동물 또는 다른 물건에 입힌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37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 ① 보험사가 지급할 제35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가 생긴 때에는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험금}}{\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전체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 배분하여 제①항 및 제②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제38조 자기부담금**

보험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공제하고 제37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8장 전기적 손해 특별약관(실손보상)**

**제39조 보상하는 손해**

보험사는 발전기, 여자기(勵磁機), 정류기, 변류기(變流器),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이와 비슷한 전기기기 또는 장치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의 목적으로 하였을

경우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40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자연열화의 손해 또는 안전장치의 기능상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제41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 ① 보험사가 지급할 제35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가 생긴 때에는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험금}}{\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전체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 배분하여 제①항 및 제②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제42조 자기부담금**

보험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10만원을 공제하고 제41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제9장 급배수설비누출손해 특별약관(실손보상)**

**제43조 보상하는 손해**

- ① 보험사는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이하 '급배수설비'라 합니다)이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직접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급배수설비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나 장치(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소화용 살수장치로서 헤드, 배관, 경보장치, 탱크, 펌프 및 이의 부속기구를 말합니다)를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합니다.

# 종합안심플랜 약관

## 제44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보험사가 지급할 제43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가 생긴 때에는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험금}}{\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전체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 배분하여 제①항 및 제②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 제10장 점포휴업(화재) 일당(1일이상) 특별약관

### 제45조 보상하는 손해

보험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중에 보험의 목적(고객이 영업을 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의 구내 중 타인이 점유하는 부분을 포함합니다)이 아래의 사고로 손해(소방 또는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를 입은 결과로 휴업을 하게 됨으로써 생긴 손해(이하 '손해'라 합니다)를 보상합니다.

1. 화재에 따른 손해
2. 화재에 따른 소방손해
3. 화재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서 5일 동안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위 제1호, 제2호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 제46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고객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화재가 났을 때에 생긴 도난 또는 분실
3.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4.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주택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합니다.
5. 화재에 기인되지 않는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의 파열
6. 발전기, 여자기(정류기를 포함합니다),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기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그러나 전기적 사고로 손해가 생긴 그 전기기기 또는 장치 이외의 보험의 목적에 생긴 화재로 인한 손해는 보상합니다.

7.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噴火), 해일,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군중 또는 다수인의 집단행동에 의해 전국 또는 일부지역에 있어서 현저히 평온을 해쳐 치안유지상 중대한 사태라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8.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 특성에 의한 사고
9. 제8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
10.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의한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제47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① 고객이 제45조(보상하는 손해)의 손실을 입었을 경우 보험사가 지급하는 점포휴업(화재) 일당(1일이상) 보험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점포휴업(화재) 일당(1일이상) 보험금

$$= \text{복구기간 내 휴업일수} \times \text{점포휴업(화재) 일당(1일이상) 1일당 가입금액}$$

② 제①항의 복구기간 내의 휴업일수는 추정복구기간과 약정복구기간 내 휴업일수 중 적은 기간으로 하며, 복구기간 내 휴업일수는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을 제외한 기간으로 합니다.

【약정복구기간】 계약 당시 보험증권에 기재된 약정복구기간으로 2개월로 합니다. 단, 법정공휴일(일요일 포함)을 제외하며 보험목적에 손해를 입었던 때부터 기산합니다.

【추정복구기간】 보험의 목적을 손해발생 직전의 상태로 복구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복구기간】 보험금지급 대상이 되는 기간으로 보험의 목적에 손해를 입은 때부터 지체 없이 이를 복구할 때까지 필요한 기간을 말합니다. 또한 법령의 규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험의 목적을 복구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정복구기간을 복구기간으로 인정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복구기간은 추정복구기간이나 약정복구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48조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제45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가 발생한 후 영업을 계속하지 않을 때 이 계약은 손해 발생시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단, 법령에 따라 규제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으며 이 경우 추정복구기간을 복구기간으로 하여 보상합니다.

## 제11장 풍수재위험 특별약관

### 제49조 보상하는 손해

- ① 보험사는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위 제①항의 경우에 보험사는 재해방지 또는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도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50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사는 아래와 같은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보험의 목적에 생긴 분실 또는 도난손해
- 2.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파열 또는 폭발의 손해
- 3. 원인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지진 또는 분화로 생긴 손해
- 4. 풍재 또는 수재와 관계없이 댐 또는 제방이 터지거나 무너져 생긴 손해
- 5. 바람, 비, 눈, 우박 또는 모래먼지가 들어 오므로써 생긴 손해. 그러나 보험의 목적인 건물 또는 보험의 목적이 들어있는 건물이나 풍재 또는 수재로 직접 파손되어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6. 추위, 서리, 얼음, 눈으로 생긴 손해
- 7. 풍재의 직접, 간접에 관계없이 보험의 목적인 네온사인장치에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및 건축전구의 필라멘트만에 생긴 손해

### 제51조 자기부담금

보험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50만원을 빼고 제52조(지급보험금의 계산)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52조 지급보험금의 계산

- ① 보험사가 지급할 제49조(보상하는 손해)의 손해가 생긴 때에는 1사고마다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때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 ② 동일한 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고 이들의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이 보험가액보다 클 경우에는 아래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다른 보험자의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1.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같은 경우: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험가입금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가입금액의 합계액}}$$

- 2. 다른 계약이 이 계약과 지급보험금의 계산방법이 다른 경우: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험금}}{\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험금의 합계액}}$$

- ③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으로 둘 이상의 보험의 목적을 계약하는 경우에는 전체가액에 대한 각 가액의 비율로 보험가입금액을 비례 배분하여 제①항 및 제②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보험금을 계산합니다.

## 제12장 이웃배상 특별약관

### 제53조 보상하는 손해

- ① 보험사는 고객이 경비대상처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에 장애(이하 '신체장애'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그러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② 제①항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1. 고객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 2. 고객이 지출한 아래의 비용
    - 가. 고객이 제56조(손해방지의무) 제①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나. 고객이 제56조(손해방지의무) 제①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다. 고객이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보험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마. 고객이 제57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보험사의 해결) 제②항 및 제③항의 보험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제54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 보험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고객(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4. 고객이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 종합안심플랜 약관

-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를 포함합니다)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고객과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었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고객이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6.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13. 고객의 근로자가 고객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14. 시설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5. 고객이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 가. 고객의 시설내에서 고객이 소유, 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나. 고객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고객이 요금을 받지 않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고객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6. 고객이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7. 아래의 사유로 생긴 물리적으로 파손되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손실에 대한 배상책임
    - 가. 고객의 채무불이행이나 이행지체
    - 나. 고객의 생산물이나 작업물건이 피보험자가 보증한 성능, 품질적합성 또는 내구성의 결함
  18.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가. 고객의 시설 내에서 사용, 소비되는 고객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 나. 고객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 밖에서 사용, 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다만, 혼유(混油)사고(‘혼유사고’라 함은 주유소 사용인의 실수나 착오로 경유 차량에 휘발유가 주입되는 형태 또는 그 반대의 이와 유사한 형태 등으로 주유가 이루어져 차량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19. 작업의 종료(작업물건의 인도를 요하는 경우에는 인도)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0. 의사(한 의사 및 수의사를 포함합니다),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 안마사, 침술사(뜸을 포함합니다), 접골사 등 전문직업인의 직업상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제55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① 보험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53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5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나'목 또는 '마'목의 비용: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53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 ②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보상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 제56조 손해방지의무

-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고객은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보험사의 동의를 받는 일
- ② 고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①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53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①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①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①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보험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 제57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보험사의 해결

- ① 고객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한도 내에서 보험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고객이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② 보험사가 제①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고객은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고객이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보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고객을 대신하여 보험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험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고객은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고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②항, 제③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보험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제58조 자기부담금

보험사는 손해액에서 1사고당 50만원을 공제하고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13장 재난보상 특별약관

### 제59조 가입대상시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2 [별표 3](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중 아래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보상 가입이 가능하며, 해당하지 않은 경우 재난보상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①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 2. 「관광진흥법」 제3조 제①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시설
-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제①항 또는 제29조 제①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 5. 「도서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서관

### 제60조 보상하는 손해

보험사는 경비대상처에서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고객이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 붕괴, 폭발로 인하여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고객이 부담하는 아래의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고객이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단, 고객의 과실 여부를 불문합니다)
- 2. 고객이 지출한 아래의 비용
  - 가. 고객이 제56조(손해방지의무) 제①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나. 고객이 제56조(손해방지의무) 제①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다. 고객이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보험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제61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보험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1. 고객 또는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4. 고객이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5. 고객이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 6.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7. 위 제6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8.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9.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0.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1.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 13. 배출시설에서 통상적으로 배출되는 배수 또는 배기(연기를 포함합니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4. 선박 또는 항공기의 소유, 관리 또는 점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15. 화재(붕괴, 폭발을 포함합니다)사고를 수반하지 않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제62조 보상 내용 및 한도

- ① 제60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는 매회의 사고마다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1. 대인사고 사망의 경우: 피해자 1인당 1억 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00만원
  - 2. 대인사고 부상의 경우: 피해자 1인당 부상 급별 보상한도 (1급 3,000만원~14급 50만원)에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 피해자 1인당



# 종합안심플랜 약관

후유장애 급별 보상한도(1급 1억 5천만원~14급 1,000만원)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4. 재산상의 손해의 경우: 1사고 당 10억원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② 제①항에 따른 이 보험은 하나의 사고로 제①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둘 이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1. 부상당한 사람이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①항 제1호에 따른 금액과 제①항 제2호에 따른 한도 금액을 더한 금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2. 부상당한 사람에게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제①항 제2호에 따른 금액과 제①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

3. 제①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제①항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①항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공제한 금액

③ 보험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특별약관에 기재된 말입니다.

1. 제60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의 손해배상금: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2. 제60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의 비용: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60조(보상하는 손해)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④ 보험기간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험사의 보상총액은 특별약관에 기재된 총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합니다.

## 제63조 손해의 발생과 통지

① 고객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 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② 고객이 제①항 각호의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리지 않으며, 제①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 비용도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이 「상법」 제657조 제①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보험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60조(보상하는 손해) 제1호 및 제2호 '다'목 또는 '라'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 제64조 손해방지의무

① 사고가 생긴 때에는 고객은 아래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송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보험사의 동의를 받는 일

② 고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①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60조(보상하는 손해)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①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①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①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 비용과 보험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 제65조 의무보험과의 관계

① 보험사는 이 약관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66조(보상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② 제①항의 의무보험은 고객이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③ 고객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다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①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 제66조 보상금의 분담

①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보험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상책임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고객이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①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③ 고객이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상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보험사의 제①항에 의한 지급보상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67조 고객의 알릴 의무**

- ① 고객은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보험사에 알리고 해당사항에 대해 보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1.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자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② 고객은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합니다.



# 시스템경비 약관 설명확인서

[회사용]

(계약번호: N )

## 주요 약관 내용(서비스)

### 1. 기기설치 전 계약의 임의해제권

- 1) 고객은 회사가 기기 설치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의 기기설치 착수 후 경비개시 이전에 고객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이 지급한 보증금에서 기성공사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며, 기성공사 비용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객은 그 초과액을 회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 2. 경비계획의 변경, 기기 관리, 설치비용

- 1) 경비구역 혹은 경비대상처의 이전, 증축, 개축, 인접건물의 구조 등 주위상황의 변화로 경비계획을 변경해야 할 때에는 15일 전에 그 사실을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 2)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기를 고객에 대여하고, 고객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기기를 관리해야 합니다.
- 3) 고객은 기기 설치에 소요된 비용을 회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는 고객의 계약기간(변경계약, 재계약 포함) 준수를 조건으로 설치비용을 할인할 수 있으며, 고객의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시 약관에 따라 할인된 설치비용을 청구합니다.

### 3. 서비스제공의 중지

회사는 ① 고객이 월 서비스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하여 회사가 상당기간을 정하여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기타 경비구역 및 서비스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환경 등의 변화가 발생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4. 손해배상

회사의 잘못으로 약정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고객에 손해가 발생·확대된 때에는 계약서에 정한 손해배상한도액 범위내에서 배상합니다.

※ 회사가 정상적으로 이상신호를 감지하고, 정상적으로 출동 대처(출동 차량이 위치한 곳에서 경비대상처까지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시간 내에 출동 대처한 경우)한 경우는 계약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된 것으로 봅니다.

### 5. 귀금속 등의 보관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류(금제품·보석류), 개당 15만원 이상의 시계류, 광파기 등의 귀중품은 회사가 제공한 금고감지기가 부착된 금고 내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서에 정한 손해배상한도액 범위내에서 배상합니다.

### 6. 회사의 면책

- ①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기기의 멸실, 훼손, 고장 등으로 정상작동이 되지 않아 발생한 손해
- ② 서비스 중지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
- ③ 기타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
- ④ 면책구역에서의 사고로 인한 손해
- ⑤ 영상녹화가 되지 않는 동안 발생한 도난, 화재 등으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해 회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7. 고객의 해지 절차, 위약금 및 철거비

- 1) 고객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 할 경우 서면 또는 콜센터를 통해 회사에 계약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2) 회사는 고객에게 해지 신청 접수사실 및 해지절차를 안내합니다.

#### ※ 해지절차 안내

- 회사는 영업담당자에게 고객을 방문하도록 하여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합니다.
- 회사와 고객은 기기 철거일자 등을 협의하고 계약종료 합의를 작성합니다.
- 계약 해지의 효력은 계약종료합의서에 기재된 해지일에 발생하며, 회사는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 고객 사유로 계약기간(변경계약, 재계약 포함) 만료 이전에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약관에 따라 고객에게 위약금 및 철거비를 청구합니다.

### 8. 통신회선 및 출동료

- 1) 통신회선 사용료는 고객이 부담하며, 월 서비스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과의 약정시 무선망(SINET 포함), 전용회선 사용료는 월 서비스료에 포함시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고객의 귀책 사유로 이상신호가 발생하여 회사가 긴급대처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고객은 소정의 출동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 9. 제공서비스

- 1) 회사는 신청서에 기재된 서비스만을 고객에게 제공하며,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내용은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2) 화재이상통보 서비스는 회사 또는 고객의 기기에 의해 감지된 이상신호가 수신되면 고객 또는 출동요원을 통해

실상황 여부를 확인한 후, (실상황인 경우)에는

(소방서에 통보)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2)번 항목은 서비스 가입자에 한해서 작성

※ 시스템경비 약관을 (교부) 받았으며, 약관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고객(신청인) :

(인)

# 시스템경비 약관 설명확인서

[고객용]

(계약번호: N )

## 주요 약관 내용(서비스)

### 1. 기기설치 전 계약의 임의해제권

- 1) 고객은 회사가 기기 설치공사를 착수하기 전까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2) 회사의 기기설치 착수 후 경비개시 이전에 고객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회사는 고객이 지급한 보증금에서 기성공사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하며, 기성공사 비용이 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객은 그 초과액을 회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 2. 경비계획의 변경, 기기 관리, 설치비용

- 1) 경비구역 혹은 경비대상처의 이전, 증축, 개축, 인접건물의 구조 등 주위상황의 변화로 경비계획을 변경해야 할 때에는 15일 전에 그 사실을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 2) 회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기기를 고객에 대여하고, 고객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기기를 관리해야 합니다.
- 3) 고객은 기기 설치에 소요된 비용을 회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는 고객의 계약기간(변경계약, 재계약 포함) 준수를 조건으로 설치비용을 할인할 수 있으며, 고객의 계약기간 만료 전 해지 시 약관에 따라 할인된 설치비용을 청구합니다.

### 3. 서비스제공의 중지

회사는 ① 고객이 월 서비스료를 2개월 이상 연체하여 회사가 상당기간을 정하여 지급을 최고하였으나 그 기간내에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기타 경비구역 및 서비스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환경 등의 변화가 발생하여 회사의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 4. 손해배상

회사의 잘못으로 약정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 고객에 손해가 발생·확대된 때에는 계약서에 정한 손해배상한도액 범위내에서 배상합니다.

※ 회사가 정상적으로 이상신호를 감지하고, 정상적으로 출동 대처(출동 차량이 위치한 곳에서 경비대상처까지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시간 내에 출동 대처한 경우)한 경우는 계약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된 것으로 봅니다.

### 5. 귀금속 등의 보관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류(금제품·보석류), 개당 15만원 이상의 시계류, 광파기 등의 귀중품은 회사가 제공한 금고감지기가 부착된 금고 내에 보관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서에 정한 손해배상한도액 범위내에서 배상합니다.

### 6. 회사의 면책

- ①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한 기기의 멸실, 훼손, 고장 등으로 정상작동이 되지 않아 발생한 손해
- ② 서비스 중지기간 중에 발생한 손해
- ③ 기타 고객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발생한 손해
- ④ 면책구역에서의 사고로 인한 손해
- ⑤ 영상녹화가 되지 않는 동안 발생한 도난, 화재 등으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해 회사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7. 고객의 해지 절차, 위약금 및 철거비

- 1) 고객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 할 경우 서면 또는 콜센터를 통해 회사에 계약해지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2) 회사는 고객에게 해지 신청 접수사실 및 해지절차를 안내합니다.

#### ※ 해지절차 안내

- 회사는 영업담당자에게 고객을 방문하도록 하여 계약 해지 절차를 진행합니다.
- 회사와 고객은 기기 철거일자 등을 협의하고 계약종료 합의를 작성합니다.
- 계약 해지의 효력은 계약종료합의서에 기재된 해지일에 발생하며, 회사는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3) 고객 사유로 계약기간(변경계약, 재계약 포함) 만료 이전에 계약이 해제·해지되는 경우 회사는 약관에 따라 고객에게 위약금 및 철거비를 청구합니다.

### 8. 통신회선 및 출동료

- 1) 통신회선 사용료는 고객이 부담하며, 월 서비스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객과의 약정시 무선망(SINET 포함), 전용회선 사용료는 월 서비스료에 포함시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 고객의 귀책 사유로 이상신호가 발생하여 회사가 긴급대처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고객은 소정의 출동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 9. 제공서비스

- 1) 회사는 신청서에 기재된 서비스만을 고객에게 제공하며,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내용은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2) 화재이상통보 서비스는 회사 또는 고객의 기기에 의해 감지된 이상신호가 수신되면 고객 또는 출동요원을 통해

실상황 여부를 확인한 후, (실상황인 경우)에는

(소방서에 통보)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2)번 항목은 서비스 가입자에 한해서 작성

※ 시스템경비 약관을 (교부) 받았으며, 약관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고객(신청인) :

(인)

# 시스템경비 약관 설명확인서

[회사용]

(계약번호: N )

## 주요 약관 내용(종합안심플랜)

### 1. 약관의 적용 및 변동

- ① 종합안심플랜은 에스원의 시스템경비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재산 보호 등을 위하여 제공되는 부가안심서비스로 고객은 에스원이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되고, 보험회사가 직접 고객에게 보상하여 드리는 상품입니다. 이에 신청사상에 선택한 서비스에 한하여 경비개시 이후부터 이 약관이 적용되고, 월 서비스료 연체 또는 서비스 중지 시 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객의 보험가입 동의를 필요한 서비스의 경우 고객이 보험사에 대하여 보험가입 동의를 하여야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② 제휴 보험회사의 사정 또는 관련 당국의 지침·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약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약관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의무는 보험회사에 있습니다.
- ③ 시스템경비 계약이 종료되거나 종합안심플랜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고객이 별도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에스원은 이에 대해 어떠한 법률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특히, 재산보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의무보험에 해당하므로 고객이 별도로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 2. 가입대상 및 제외대상

- ① 종합안심플랜은 에스원의 시스템경비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가입대상으로 합니다.
- ② 화재안심보험 플랜의 경우 주택 또는 사람이 숙박, 기거를 위하여 건축한 건물, 사무실 또는 상점이라도 일정 구역에 사람이 숙박하는 경우에는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3급, 4급 구조건물과 시장업종, 시장에 소재하고 있는 목적물, 지하 소재 목적물, 유흥주점, 가구제품제조공장, 가구점, 가구제품보관창고, 일반고물상, 사찰, 모델하우스, 목재제품제조공장, 가죽, 가방, 신발제조공장, 목욕탕, 사우나, 찜질방, 고가품취급고물상(동, 스텐등), 펜션,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사무실, 하수, 분노, 축산 폐기물처리 사무실, 불링장, 목제품 제조공장, 방사성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사무실, 비디오, DVD감상실은 화재안심보험 플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이 불가능한 업종이 화재안심보험 플랜에 가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 ③ 재난보상 플랜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2 [별표 3](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중 아래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보상 가입이 가능하며, 해당하지 않은 경우 재난보상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 2)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시설
  -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제1항 또는 제29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 5) 「도서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서관
- ④ 에스원의 시스템경비서비스 계약이 해제·해지로 종료되거나 중지된 경우, 고객이 종합안심플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3. 자기 부담금

보험회사는 화재안심보험 플랜 중 유리 손해 및 전기적 손해 보상에 대하여 1사고당 10만원, 이웃배상에 대하여 1사고당 50만원, 풍수재 보상에 대하여 1사고당 50만원의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공제하고 보상합니다. 그 외 플랜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 4.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스페셜보상 플랜

- 1) 고객(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고객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손해
- 2) 고객의 가족, 친족, 사용인, 동거인, 숙박인 또는 당직자가 일으킨 행위 또는 이들이 가담하거나 묵인하여 생긴 도난손해
- 3) 풍수해화재, 폭발이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손해
- 4) 절도, 강도 행위로 발생한 화재 및 폭발손해
- 5) 영업활동 중에 상점, 영업소, 창고 또는 작업장 내에서 강도에 의하지 아니한 손해
- 6) 재고조사 시 발견된 손해
- 7) 망실 또는 분실 손해
- 8)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 9) 도난손해가 생긴 후 30일 이내에 발견하지 못한 손해
- 10) 에스원의 경비시스템이 작동 해지된 상태로 경비구역을 72시간 이상 비워 둔 동안에 생긴 도난손해
- 11) 경비대상물이 경비구역을 벗어나 보관되는 동안에 생긴 도난손해
- 12) 자동차, 오토바이에 발생한 손해, 단 전시상품일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13) 동·식물에 발생한 손해
- 14) 에스원의 서비스 제공이 중지 또는 해지된 동안에 생긴 도난손해
- 15) 경비시스템이 작동 해제 시 출입문(창문을 포함합니다)의 잠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도난손해 또는 외부로부터 침입흔적이 없는 도난손해
- 16) 귀금속 영업점(14K, 18K류 판매 등 액세서리점 포함)의 경우, 영업활동 이외의 시간에 금고감지기가 부착된 금고 내에 보관되지 않은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류, 매입단가 기준 30만원 이상의 14K, 18K류 및 시계류 등의 귀중품에 발생한 도난손해
- 17) 면책구역에서의 도난손해

그 외 화재안심보험 플랜, 재난보상 플랜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약관에 기재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소멸시효

보상금의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본 내용은 약관 일부를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안심플랜의 주요 약관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고객(신청인) :

(인)

# 시스템경비 약관 설명확인서

[고객용]

(계약번호: N )

## 주요 약관 내용(종합안심플랜)

### 1. 약관의 적용 및 변동

- ① 종합안심플랜은 에스원의 시스템경비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재산 보호 등을 위하여 제공되는 부가안심서비스로 고객은 에스원이 가입한 보험의 피보험자가 되고, 보험회사가 직접 고객에게 보상하여 드리는 상품입니다. 이에 신청서상에 선택한 서비스에 한하여 경비개시 이후부터 이 약관이 적용되고, 월 서비스료 연체 또는 서비스 중지 시 본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또한, 고객의 보험가입 동의를 필요한 서비스의 경우 고객이 보험사에 대하여 보험가입 동의를 하여야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 ② 제휴 보험회사의 사정 또는 관련 당국의 지침·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약관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약관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의무는 보험회사에 있습니다.
- ③ 시스템경비 계약이 종료되거나 종합안심플랜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고객이 별도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에스원은 이에 대해 어떠한 법률상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특히, 재산보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상의 의무보험에 해당하므로 고객이 별도로 가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 2. 가입대상 및 제외대상

- ① 종합안심플랜은 에스원의 시스템경비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가입대상으로 합니다.
- ② 화재안심보험 플랜의 경우 주택 또는 사람이 숙박, 기거를 위하여 건축한 건물, 사무실 또는 상점이라도 일정 구역에 사람이 숙박하는 경우에는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3급, 4급 구조건물과 시장업종, 시장에 소재하고 있는 목적물, 지하 소재 목적물, 유흥주점, 가구제품제조공장, 가구점, 가구제품보관창고, 일반고물상, 사찰, 모델하우스, 목재제품제조공장, 가죽, 가방, 신발제조공장, 목욕탕, 사우나, 찜질방, 고가품취급고물상(동, 스텐등), 펜션,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사무실, 하수, 분노, 축산 폐기물처리 사무실, 불링장, 목제품 제조공장, 방사성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사무실, 비디오, DVD감상실은 화재안심보험 플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이 불가능한 업종이 화재안심보험 플랜에 가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 ③ 재난보상 플랜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3조의2 [별표 3](재난 관련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대상 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중 아래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재난보상 가입이 가능하며, 해당하지 않은 경우 재난보상 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 2)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 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 이상인 시설
  -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제1항 또는 제29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 5) 「도서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도서관
- ④ 에스원의 시스템경비서비스 계약이 해제·해지로 종료되거나 중지된 경우, 고객이 종합안심플랜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는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3. 자기 부담금

보험회사는 화재안심보험 플랜 중 유리 손해 및 전기적 손해 보상에 대하여 1사고당 10만원, 이웃배상에 대하여 1사고당 50만원, 풍수재 보상에 대하여 1사고당 50만원의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공제하고 보상합니다. 그 외 플랜에 대해서는 자기부담금을 공제하지 않습니다.

### 4.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스페셜보상 플랜

- 1) 고객(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고객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도난손해
- 2) 고객의 가족, 친족, 사용인, 동거인, 숙박인 또는 당직자가 일으킨 행위 또는 이들이 가담하거나 묵인하여 생긴 도난손해
- 3) 풍수해화재, 폭발이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손해
- 4) 절도, 강도 행위로 발생한 화재 및 폭발손해
- 5) 영업활동 중에 상점, 영업소, 창고 또는 작업장 내에서 강도에 의하지 아니한 손해
- 6) 재고조사 시 발견된 손해
- 7) 망실 또는 분실 손해
- 8) 사기 또는 횡령으로 인한 손해
- 9) 도난손해가 생긴 후 30일 이내에 발견하지 못한 손해
- 10) 에스원의 경비시스템이 작동 해지된 상태로 경비구역을 72시간 이상 비워 둔 동안에 생긴 도난손해
- 11) 경비대상물이 경비구역을 벗어나 보관되는 동안에 생긴 도난손해
- 12) 자동차, 오토바이에 발생한 손해, 단 전시장품일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13) 동·식물에 발생한 손해
- 14) 에스원의 서비스 제공이 중지 또는 해지된 동안에 생긴 도난손해
- 15) 경비시스템이 작동 해제 시 출입문(창문을 포함합니다)의 잠금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도난손해 또는 외부로부터 침입흔적이 없는 도난손해
- 16) 귀금속 영업점(14K, 18K류 판매 등 액세서리점 포함)의 경우, 영업활동 이외의 시간에 금고감지기가 부착된 금고 내에 보관되지 않은 현금, 유가증권, 귀금속류, 매입단가 기준 30만원 이상의 14K, 18K류 및 시계류 등의 귀중품에 발생한 도난손해
- 17) 면책구역에서의 도난손해

그 외 화재안심보험 플랜, 재난보상 플랜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는 약관에 기재된 보상하지 않는 손해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 소멸시효

보상금의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본 내용은 약관 일부를 요약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안심플랜의 주요 약관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듣고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고객(신청인) :

(인)





